



도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제2836호 2022. 3. 18.(금)

www.jeonbuk.go.kr

입법예고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16호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17호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2-436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공고 22
- 전라북도 공고 제2022-437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공고 23
- 전라북도 공고 제2022-43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24
- 전라북도 공고 제2022-43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25
- 전라북도 공고 제2022-447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26
- 전라북도 공고 제2022-486호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업자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37
- 전라북도 공고 제2022-489호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발급 공고 38
- 전라북도 공고 제2022-49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사항 공고 39
- 전라북도 공고 제2022-501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40
- 전라북도 공고 제2022-522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41
- 전라북도 공고 제2022-542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42
- 전라북도 공고 제2022-543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43
- 전라북도 공고 제2022-545호 도로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44
- 전라북도 공고 제2022-548호 도로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46

도지사 지시사항

- 2022. 3. 14.(월)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48

회람									
-----------	--	--	--	--	--	--	--	--	--

발행 전라북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시군행정

- 전주시 공고 제2022-719호 도시계획시설(덕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50
- 익산시 공고 제2022-845호 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63
- 익산시 공고 제2022-847호 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65

기 타

-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88호 공인 등록 공고 67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16호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여자금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결정(안 제9조 4항)
- 나. 기금의 존속기한의 폐지(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 나. 예산조치 : 예산과 협의(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관련기관 협의: 감사관, 여성청소년과, 법무행정과
- 라. 비용추계서 : 첨부
- 마. 입법예고 : 2022. 3. 18. ~ 4. 7.(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2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전라북도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전화 : 063-280-2412, FAX : 063-280-2419)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회복지과(전화 : 063-280-2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를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연 15퍼센트 이하의 범위”를 “시중은행 연체금리 범위내”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 ----- -----.</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략)</p> <p>②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의 별도 기금계좌로 관리·운용하며, 이를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이를 「전라북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 -----.</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자금의 대여) ① ~ ③ (생략)</p> <p>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 이하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에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을 고려하여 연 1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p>	<p>제9조(자금의 대여)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시중은행 연체금리 범위내 ----- -----.</p>
<p>⑤·⑥ (생략)</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차액 보전) ①·② (생략)</p> <p>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리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리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p>	<p>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차액 보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제9조제5항 ----- -----.</p>
<p>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삭 제></p>

붙임 1

비용추계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개정조례안 제14조(존속기한) 개정에 따라 재정수반 요인 있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 개정 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수입	공공예금이자	31,484	31,668	31,933	29,910	27,551	152,546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4,200	44,200	164,200	124,200	104,200	461,000
	예탁금원금회수	400,000	400,000	-	-	-	800,000
	예탁금이자	16,240	6,268	-	-	-	22,508
	예치금회수	3,935,528	3,958,452	3,991,588	3,738,720	3,443,830	19,068,118
	소 계	4,407,452	4,440,588	4,187,721	3,892,830	3,575,581	20,504,172
지출	비용자성	289,000	289,000	289,000	289,000	289,000	1,445,000
	융자성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800,000
	예치금	3,958,452	3,991,588	3,738,721	3,443,830	3,126,581	18,259,172
	소 계	4,407,452	4,440,588	4,187,721	3,892,830	3,575,581	20,504,172

4. 재원조달 계획

(단위:천원)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4,358,452	3,991,588	3,738,721	3,443,831	3,071,480	18,604,072
시군비							
민 간							
기 타							
합 계							

5. 부대의견 : 없음
6. 협의사항 : 예산과
7. 참여자 및 작성자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이종성(280-2412)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천원)

구 분	사업내용	2022년 예 산	이 후 연간예산 (5개년)	비고
합계		4,384,528	21,833,588	
전세점포임 대 용 자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준 :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전세점포 ◦ 지원금액 : 2,000만원 ~ 10,000만원 한도내 용자지원 ◦ 용자이자 : 연리 1% (연체이자 : 연리 6%) ◦ 지원기간 :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까지 가능) 	160,000	800,000	
전 북 형 성 과 중 심 자 활 역 량 강 화 사 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자활사업 참여자 등 ◦ 사업내용 : 전문인력양성, 자활생산물 경쟁력 강화, 전북자활 어울 한마당 등 	289,000	1,445,000	
예 탁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20억원 예탁, 2020년부터 5억원씩 상환 (약정이율 2.5%) 	-	-	
예 치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예금 이자 예치(이율 0.8% 적용) 	3,935,528	18,259,172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填)
-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 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제26조의5(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17호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가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분리되어 제정된 사항을 조례를 반영하는 등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직무상 상해’ 또는 ‘직무상 질병’,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구체적 인정 범위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안 제3조, 제5조)
-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 다. 제명 띄어쓰기(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라. 별지 서식(근거 조문 등 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법률 제17753호, 2020. 12. 22., 개정]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대통령령 제31820호, 2021. 6. 22., 개정]
 - 「지방자치법」 제42조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개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협의: 감사관실, 예산과, 법무행정과, 여성청소년과, 의회사무처
- 라. 입법예고: 2022. 3. 18. ~ 2022. 3. 22.(5일간)
- 마.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에 해당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정무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정무기획과(전화: 063-280-2591, FAX: 063-280-386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정무기획과 의정협력팀(전화: 063-280-2591)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3조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원이었던 자”를 “도의원이었던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직무””를 “각 호”로,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도의회의원”을 각각 “의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치료비전액”을 “치료비 전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제2호에 따른 지급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애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 그 밖의”를 “경우 또는 그 밖에”로, “경우 :”를 “경우:”로, “당해 의원”을 “해당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전라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통보한다”를 “알린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라북도의회의원 상해등”을 “전라북도의회 의원 상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제2항제1호에 의해 도의원”으로 한다.

1. 도의회 의원 중 1명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박의”를 “박에”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도지사”를 “도”로, “만료된”을 “끝난”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날로부터 15일이내”를 “날부터 15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알려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심의회회의 수당등)”을 “(심의회회의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전라북도의회 의원의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u></p>	<p><u>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p> <p>3. “유족”이란 <u>의원이었던 자</u>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u>자</u>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①----- 뜻은 ----- -----.</p> <p>1. (현행과 같음)</p> <p>2. ----- 제33조에 따른 -----.</p> <p>3. ----- <u>도의원이었던 사람</u>----- ----- ----- <u>사람</u> ----- -----.</p>
<p>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 3. (생 략)</p> <p>4. 그 <u>밖</u>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p> <p>② 제1항 <u>각호</u>의 “<u>직무</u>”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u>각 호</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밖</u>에 -----</p> <p>②---- <u>각 호</u>----- ----- ----- 「공무원 재해보상법」 ----- -----.</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u>도의회의원</u>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p> <p>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u>도의회의원</u>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p> <p>3. <u>기타</u>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u>치료비전액</u>.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제1항 <u>각호</u>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p>	<p>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u>각 호</u>-----.</p> <p>1. ----- ----- <u>도의원</u> ----- -----</p> <p>2. ----- <u>도의원</u> ----- -----</p> <p>3. <u>그 밖에</u> ----- <u>치료비 전액</u>. -- - 제2호에 따른 지급액----- -----.</p> <p>②---- <u>각 호</u>----- -----.</p>

③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전라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③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도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
조에서 정한 장애등급-----
-----.

②-----
----- 치
료가 필요한 -----.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1. -----
----- 경우: -----
2. ----- 경우 또는 그 밖에
----- 경우: ----- 해당 도의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전라북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알린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 ①-----

----- 전라북도의회 의원 상해
등 -----.

②-----
-----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 의원중 1명

2.·3. (생략)

4.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그 밖의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② (생략)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 도의회 의원 중 1명

2.·3. (현행과 같음)

4. ----- 사람 -----

③ 제2항제1호에 의해 도의원-----

-----.

제10조(심의회 기능) ----- 각호-----
-----.

1. ~ 3. (현행과 같음)

4. -- 밖에 -----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
-----, ----- 도 -----
----- 끝난 -----
-----.

제12조(심의회 위원장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

제13조(심의회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날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2호서
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알려야 -----.

제15조(심의회 수당 등) -----
----- 대해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3>

접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처리기간
					즉 시
보 상 대 상 의 원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구 내 금 용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실 여 부 및 상 태 등 경 위 조 사 내 용					
심 의 회	<결 정> <결정이유>				
심 의 결 과	<심의위원 서명>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참 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개정후)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후)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전)

제35조(공무상요양비)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藥劑), 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지급
3. 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③ **제1항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12. 31.]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2.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전)

제29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인정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이 새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 또는 부상보다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로 한다. 다만,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의 발생이나 그 현저한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질병

-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 또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나.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공무상 부상

-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③ 공무상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본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7. 28.]

별표 2의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29조제2항 관련)

제45조(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으며,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정해진 장애 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전문개정 2012. 3. 2.]

별표 3 장애등급(제45조제1항 관련)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후)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후)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22.>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조 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장해등급(제40조제1항 본문 관련)

전라북도 공고 제2022-436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3월 18일

■ 공 고 사 항

- 1. 등록번호 : 제2022-04호
- 2. 모 집 자 : 송동면 발전협의회
- 3. 모집목적 : 송동면민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송동면지 발간
- 4. 모집목표액(변경)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5. 모집금품 : 현금
- 6. 모집기간(변경) : 2021. 5. 10. ~ 2023. 5. 31.
- 7. 사용기간(변경) : 2021. 5. 10. ~ 2024. 5. 31.
- 8. 모집지역 : 전국
- 9. 모집방법 : 후원모금

* 사무실 소재지 : 남원시 송도면 송기길 38

전라북도 공고 제2022-437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3월 18일

■ 공 고 사 항

1. 등록번호 : 제2022-05호
2. 모 집 자 : 익산문화원
3. 모집목적 : 익산시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시민의 중을 제작하여 세계 유산의 도시 익산을 홍보하고 백제왕도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하기 위함
4. 모집목표액 : 금470,000,000원(금사억칠천만원)
5. 모집금품 : 현금
6. 모집기간(변경) : 2020. 7. 1. ~ 2023. 12. 31.
7. 사용기간(변경) : 2020. 7. 1. ~ 2023. 12. 31.
8. 모집지역 : 전국
9. 모집방법 : 온라인 모금 및 후원모금 등
* 사무실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선화로 529

전라북도 공고 제2022-43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 3. 18.

전라북도지사

□ 공 고 사 항

등록번호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된사업	등록일
제2022-1-전라북도-9호	전라북도노인체육회	김문철	· 각 가맹단체와 자치단체 노인체육회 관리 및 지원 · 노인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대회 개최 지원 · 전국노인체육대회 참가선수단 훈련 및 참가 · 노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노인체육회 육성 및 보급 등	2022. 3. 11.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2-43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3월 18일

1. 등록번호 : 제2016-1-전라북도-4호
2. 단체명칭 : 가톨릭농민회 전주교구연합회
3.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0
4. 대표자
 - 성 명 : 김동섭
 - 생년월일 : 1960. 3. 28.
 - 주 소 : 전북 부안군 하서면 등용길 15
5. 주된 사업
 - 사람과 땅을 비롯한 자연을 살리는 생명농업 실천
 - 서로 살려 함께 사는 생활공동체 활동
 -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만나 나누는 직거래 활동
 - 마음과 몸을 튼튼히 하고 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심신수련과 생활건강운동 등
6.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 변경전 : 장 종 혁
 - 변경후 : 김 동 섭
7. 허가(변경)일자 : 2022. 3. 11.

전라북도 공고 제2022-447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3월 18일

■ 공 고 사 항

1. 허가번호 : 제2021-31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전라북도체육회
3. 소 재 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62(전라북도체육회)
4. 대 표 자 : 정강선
5. 주요사업
 - 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 체육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원과 지도
 - 전라북도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 대한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대한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 전라북도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 촉진
 - 전라북도 체육인의 권익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 전라북도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의 보급
 - 전라북도 내 공공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 전라북도 학교체육(청소년체육활동 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 전라북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위·수탁사업 포함)
 - 전라북도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 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 그 밖에 전라북도 체육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6. 변경 허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7. 변경 허가일자 : 2022. 3. 11.

□ 전라북도체육회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구 조문)	개정안(신 조문)
<p>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및 <u>제39조</u>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이다.</p> <p>② “생략”</p>	<p>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및 <u>제13조의3</u>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이다.</p> <p>② “생략”</p>
<p>제4조(사업) 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다음의</u>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p> <p>1~13. “생략”</p>	<p>제4조(사업) 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다음 각 호의</u>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p> <p>1~13. “생략”</p>
<p>제2장 회원</p>	<p>제2장 조직</p>
<p>제6조(조직) ① 체육회의 <u>회원단체는 시·군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구성하고,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분한다.</u></p> <p>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u>용어의 뜻은</u>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회원단체’는 <u>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u>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u>의결로써</u> 회원 가입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u>의결로써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u>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u>단체의</u>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p>③ <u>시·군 체육회는 체육회 정회원단체로 한다.</u> <신설></p>	<p>제6조(조직) ① 체육회의 <u>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단체가 되는 회원단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종목단체”: 해당 지역에서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2. “시·군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u>체육회</u> <p>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u>구분은</u>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u>의결로</u> 회원 가입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u>의결을 거쳐 회원 가입을 확정</u>한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u>단체가</u>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p>③ 삭제</p> <p>④ 제2항의 구분에 따른 회원의 자격요건은 체육단체의 규모, 기능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p>
<p>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u>회원종목단체를</u>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p>	<p>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체육회는 <u>회원단체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u>해당 회원단체를</u>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u>다만 체육회가 도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단체가 소속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하며, 시·군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u></p>

현 행(구 조문)	개정안(신 조문)
<p>1. “생략”</p> <p>2. 60일 이상의 <u>회원종목단체장</u>의 궐위 또는 사고</p> <p>3. “생략”</p> <p>4. <u>타 시·도 회원종목단체 및 해당 회원종목단체</u> 내의 각종 분쟁</p> <p>5. “생략”</p> <p>② 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u>회원종목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게</u>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u>회원종목단체</u>의 임원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p> <p>④~⑥ “생략”</p>	<p>1. “생략”</p> <p>2. 60일 이상의 <u>회원단체장</u>의 궐위 또는 사고</p> <p>3. “생략”</p> <p>4. <u>해당 회원단체</u> 내의 각종 분쟁</p> <p>5. “생략”</p> <p>② 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u>해당 회원단체에게</u>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u>회원단체</u>의 임원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p> <p>④~⑥ “생략”</p>
<p>제10조의2(회원종목단체의 강등·제명) ① 정회원단체 또는 준회원단체가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p> <p>② <u>인정단체가</u>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u>제명</u>할 수 있다.</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를</u> 강등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④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u>회원종목단체</u>의 강등 또는 제명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p>	<p>제10조의2(회원단체의 강등·제명) ① 체육회의 정회원단체가 정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u>다만, 이 경우 체육회는 도종목단체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회원인 경우 미리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하며, 시·군체육회인 경우 미리 해당 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u></p> <p>② <u>준회원단체와 인정단체가</u> 정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u>강등 또는 제명</u>할 수 있다.</p> <p>③ <u>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단체를</u> 강등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④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u>회원단체</u>의 강등 또는 제명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p>
제 3 장 총회	제 3 장 총회
<p>제12조(총회의 기능) 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2. “생략”</p> <p>3. <u>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u></p> <p>4~6. “생략”</p>	<p>제12조(총회의 기능) 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2. “생략”</p> <p>3. <삭제></p> <p>4~6. “생략”</p>

현 행(구 조문)	개정안(신 조문)
<p>제14조(총회의 소집) ①~⑥ “생략”</p> <p><신설></p>	<p>제14조(총회의 소집) ①~⑥ “생략”</p> <p>⑦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p>
<p><본조 신설></p>	<p>제15조의2(총회 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대의원 2명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p>
<p>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금전 및 재산의 <u>수수료</u>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p>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금전 및 재산의 <u>주고받음을</u>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p>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② “생략”</p> <p>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u>의결한다</u>.</p> <p>④~⑤ “생략”</p>	<p>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② “생략”</p> <p>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u>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u>.</p> <p>④~⑤ “생략”</p>
<p>제18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① “생략”</p> <p>② 체육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7. “생략” 8.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u>가입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u> 9. “생략” 	<p>제18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① “생략”</p> <p>② 체육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7. “생략” 8.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u>가입승인, 강등 및 제명</u> 9. “생략”
<p>제19조(이사회 소집) ①~⑤ “생략”</p> <p>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u>수수료</u>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⑦ “생략”</p>	<p>제19조(이사회 소집) ①~⑤ “생략”</p> <p>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u>주고받음을</u>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⑦ “생략”</p>
<p><본조 신설></p>	<p>제20조의2(이사회 의사록 작성)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p>

현 행(구 조문)	개정안(신 조문)
	을 기재하고 회장과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u>제 5 장 임원</u>	<u>제 5 장 임원</u>
<p>제23조(임원) ① 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부회장 9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u>이상 포함</u>) 3. <u>이사 26명 이상</u> 50명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을 포함한다) 4. <u>감사 2명</u> <p>② “생략”</p> <p>③ 제1항제3호에서 정한 <u>이사의 수는</u> 총회 의결로 20명 <u>이하로</u> 증원 할 수 있다.</p>	<p>제23조(임원) ① 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부회장 9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u>이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3. <u>이사 15명 이상</u> 50명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을 포함한다) 4. <u>감사 3명</u> <p>② “생략”</p> <p>③ 제1항제3호에서 정한 <u>이사 수의 상한은</u> 총회 의결로 20명 <u>이하의 범위 내에서</u> 증원 할 수 있다.</p>
<p>제24조(회장의 선출) ①~② “생략”</p> <p>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선거인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생략” 3. <u>종목의 특성(회장선거 직전에 개최된 전국체전, 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종합대회의 종목으로 채택되었는지를 말한다)</u> <p>④ <u>선거일 결정과</u>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u>이사가 제17조에 의한 해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26명</u> 미만이 되거나, 임기 만료로 이사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p>3~4. “생략”</p> <p>⑤ “생략”</p> <p>⑥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u>임원 및 직원이</u>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⑦~⑭ “생략”</p>	<p>제24조(회장의 선출) ①~② “생략”</p> <p>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선거인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생략” 3. <u>회장선거 직전에 개최된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개최된 종목</u> <p>④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u>이사의 제적수가 15명</u> 미만이 되거나, 임기 만료로 이사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p>3~4. “생략”</p> <p>⑤ “생략”</p> <p>⑥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u>임원이</u>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현 행(구 조문)	개정안(신 조문)
<p>제2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u>지명한 부회장 또는</u>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p> <p>②~③ “생략”</p>	<p>⑦~⑭ “생략”</p> <p>제2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u>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는 경우에는</u>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p> <p>②~③ “생략”</p>
<p>제27조(임원의선임) ①~③ “생략”</p> <p>④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 대학(학사)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u>20%</u>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체육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u>30%</u>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u>30%</u>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p>4~6. “생략”</p> <p>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u>정회원단체 중 회원종목단체 대표인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u>,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u>중에서 회계감사 1명</u>을 선임한다.</p> <p>⑥~⑨ “생략”</p>	<p>제27조(임원의선임) ①~③ “생략”</p> <p>④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 대학(학사)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u>40%</u>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체육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u>20%</u>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u>20%</u>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p>4~6. “생략”</p> <p>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u>행정감사는 정회원단체 대의원 중에서 도종목단체 1명과 시·군체육회 1명, 회계감사는</u>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다.</p> <p>⑥~⑨ “생략”</p>
<p>제28조(임원의 직무) ①~③ “생략”</p> <p>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생략”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u>총회 또는 전라북도지사에게</u> 보고하는 일 <p>4. “생략”</p> <p>⑤ 임원이 <u>체육회의</u>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3. “생략”</p> <p>⑥~⑦ “생략”</p> <p>⑧ 체육회 <u>회원종목단체의</u>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체육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p>	<p>제28조(임원의 직무) ①~③ “생략”</p> <p>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생략”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u>이사회 또는 총회에</u> 보고하는 일 <p>4. “생략”</p> <p>⑤ 임원이 <u>체육회 또는 회원단체의</u>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3. “생략”</p> <p>⑥~⑦ “생략”</p> <p>⑧ 체육회 <u>회원단체의</u>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체육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체육회 임원으</p>

현 행(구 조문)	개정안(신 조문)
	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p>제2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처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②~⑤ “생략”</p> <p>⑥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u>직근</u>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일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p> <p>⑦~⑨ “생략”</p>	<p>제2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처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임원 중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이면 임기와 연임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u></p> <p>②~⑤ “생략”</p> <p>⑥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u>바로 다음</u>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일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p> <p>⑦~⑨ “생략”</p>
<p>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1~2. “생략”</p> <p>3. <u>국민체육진흥법</u>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u>및 시도·시군구</u>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p> <p>4. <u>국민체육진흥법</u>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u>및 시도·시군구</u>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p> <p>5. <u>국민체육진흥법</u>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u>및 시도·시군구</u>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다. “생략”</p> <p><신설></p> <p>②~④ “생략”</p>	<p>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1~2. “생략”</p> <p>3. 「<u>국민체육진흥법</u>」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u>시·도 및 시·군·구</u>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p> <p>4. 「<u>국민체육진흥법</u>」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u>시·도 및 시·군·구</u>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u>국민체육진흥법</u>」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p> <p>5. 「<u>국민체육진흥법</u>」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u>시·도 및 시·군·구</u> 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다. “생략”</p> <p>6. 대한체육회 이사회가 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체육회의 임원으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p> <p>②~④ “생략”</p>
<p>제34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시·군종목단체로 조직한다.</p> <p>② “생략”</p>	<p>제34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u>회원인</u> 시·군종목단체로 조직한다.</p> <p>② “생략”</p>

현 행(구 조문)	개정안(신 조문)
<p>제35조(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u>회장, 부회장은</u>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p> <p>②~③ “생략”</p>	<p>제35조(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u>회장은</u>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p> <p>②~③ “생략”</p>
<p>제36조(시·군체육회의조직및구성) ①~② “생략”</p> <p>③ <u>시·군체육회 임원의 임기, 자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u></p> <p>④ 시·군체육회의 <u>조직, 운영</u> 등에 관해서는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p>	<p>제36조(시·군체육회의조직및구성) ①~② “생략”</p> <p>③ <삭제></p> <p>④ 시·군체육회의 <u>임원의 임기, 자격사유, 조직, 운영</u> 등에 관해서는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p>
<p>제38조(각종위원회의설치)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 위원은 체육회의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u>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학사)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직위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u></p> <p>④ “생략”</p>	<p>제38조(각종위원회의설치)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 위원은 체육회의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u>없다.</u></p> <p>④ “생략”</p>
<p>제39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생략”</p> <p>②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요건을 고려하여</u>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3. “생략”</p> <p>4. 인권 <u>분야에</u>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p> <p>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u>및 시도·시군구</u>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p> <p>2. “생략”</p> <p>④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다른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u>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직위원수의</u></p>	<p>제39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생략”</p> <p>②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u>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3. “생략”</p> <p>4. 인권 <u>분야에서</u>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p> <p>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u>시·도 및 시·군·구</u>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p> <p>2. “생략”</p> <p>④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다른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u>없다.</u></p>

현 행(구 조문)	개정안(신 조문)
<p><u>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총회의 의결 또는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했을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u></p> <p>⑤ “생략”</p>	<p>⑤ “생략”</p>
<p>제40조(위원회의운영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u>보수</u>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당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u>실비</u>는 지급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40조(위원회의운영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u>보수·급여성 수당</u>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당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u>경비</u>는 지급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44조(잉여금의처리) 체육회의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u>다음</u> 순으로 처리한다.</p> <p>1~2. “생략”</p>	<p>제44조(잉여금의처리) 체육회의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u>다음 각 호의</u> 순으로 처리한다.</p> <p>1~2. “생략”</p>
<p>제46조(재산의대여및사용) 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p> <p>1~2. “생략”</p> <p>3. <u>기타</u>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체육회 및 회원단체의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p>	<p>제46조(재산의대여및사용) 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p> <p>1~2. “생략”</p> <p>3. <u>그 밖에</u>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체육회 및 회원단체의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p>
<p>제49조(회계감사등) ① <u>체육회의 회계감사는</u> 연 1회 실시한다.</p> <p>②~③ “생략”</p>	<p>제49조(회계감사등) ① <u>체육회는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u> 연 1회 실시한다.</p> <p>②~③ “생략”</p>
<p>제50조(체육회의감사·징계등) ①~② “생략”</p> <p>③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가 대한체육회의 정관, <u>제 규정</u>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한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p>	<p>제50조(체육회의감사·징계등) ①~② “생략”</p> <p>③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가 대한체육회의 정관, <u>각종 규정</u>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한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p>

현 행(구 조문)	개정안(신 조문)
④~⑤ “생략”	④~⑤ “생략”
<p>제51조(사무처) ①~② “생략”</p> <p>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p> <p>④~⑥ “생략”</p>	<p>제51조(사무처) ①~② “생략”</p> <p>③ 사무처장은 <u>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채용 방식 등으로 선발된 사람</u>을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p> <p>④~⑥ “생략”</p>
<u>제10장 보칙</u>	<u>제10장 보칙</u>
<p>제54조(해산) ① “생략”</p> <p>② 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u>잔여재산</u>은 전라북도청에 귀속한다. 다만, <u>이사회</u>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u>공공단체</u>에 기부할 수 있다.</p>	<p>제54조(해산) ① “생략”</p> <p>② 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u>남은재산</u>은 전라북도청에 귀속한다. 다만, <u>총회</u>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u>비영리 법인</u>에 기부할 수 있다.</p>
<p>제55조(정관의 변경) ① “생략”</p> <p>② 체육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후 대한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체육회 총회 <u>재적대의원</u>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대한체육회가 체육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u>개·수정 및 삼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에 대해</u>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56조 3항에서 이동></p>	<p>제55조(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① “생략”</p> <p>② 체육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후 대한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체육회 총회 <u>출석대의원</u>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대한체육회가 체육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u>수정 보완</u>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체육회는 <u>정관을 개정하고 전라북도지사의 승인 받은 후</u>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알려야 한다.</p>
<p>제56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① 체육회의 <u>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u></p> <p>② 체육회는 <u>규정의 제·개정을 할 경우</u>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알려야 한다.</p> <p>③ “생략”</p>	<p>제56조(규정의 제정 개정) ① 체육회의 <u>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개정한다.</u></p> <p>② <삭제></p> <p>③ “생략”</p>
<p>제57조(규정의 해석 등) ① “생략”</p> <p>② 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정관, 시·도체육회 규정 및 <u>기타</u>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u>불분명한</u> 사항은 대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p>	<p>제57조(규정의 해석 등) ① “생략”</p> <p>② 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정관, 시·도체육회 규정 및 <u>그 밖의</u>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u>분명하지 않은</u> 사항은 대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p>

현 행(구 조문)	개정안(신 조문)
	른다.
<p>제58조(제한사항) 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한체육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한다.</p> <p>1~5. “생략”</p> <p>6. 대한체육회 재정 지원</p> <p>7~8. “생략”</p>	<p>제58조(제한사항) 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정관, 각 중 규정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한체육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다.</p> <p>1~5. “생략”</p> <p>6. 대한체육회의 재정 지원</p> <p>7~8. “생략”</p>
<p>제59조(경영공시) ① 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과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p>	<p>제59조(경영공시) ① 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게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과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2.00.00.)</p> <p>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 의결 후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회인 시·군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체육회의 정회원 단체가 된다.</p> <p>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회인 시·군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른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되,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제1항제1호의 권리는 제한 받는다.</p> <p>③ 이 정관 시행 당시 체육회의 지회인 시·군체육회가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한체육회의 지회인 체육회와 체육회의 지회인 시·군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회원시·도체육회 및 체육회의 회원인 시·군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보며, 대한체육회가 체육회에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른 회원시·도체육회와 회원시·군체육회에 행한 행위로 본다.</p> <p>④ 이 정관 시행 당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회원시·군체육회는 정회원단체로 본다.</p>

전라북도 공고 제2022-486호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업자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전라북도지사

1.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8일간(2022. 3. 14. ~ 2022. 3. 31.)
2. 공고방법: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공고
3. 공시송달 내용

상호	대표자	주소지	처분의 원인	예정된 처분	비고
대성엔지니어링(주)	김종관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27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4. 고 지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과(063-280-3235). 끝.

전라북도 공고 제2022-489호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발급 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전라북도지사

1. 등록 연월일 : 2022. 3. 17.
2. 등록번호 및 업종 : 제04-14-0008호 (보존과학업)
3. 상호·명칭 및 성명 : (주)백제문화재연구소(오정현)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2길 25-9, 1층

전라북도 공고 제2022-499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3월 18일

1. 등록번호 : 2012-1-1전라북도-7
2. 단체명칭 :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
3. 대표자 : 심재균
4. 소재지 : 전주시 완산구 물왕말3길 29, 2층
5. 주된 사업
 - 지역사회경제 활동조직 지원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6. 최초등록일 : 2012. 3. 7.
7. 등록 말소 사항

등록말소일	등록 말소 이유
2022. 3. 16.	자진 신청 말소

전라북도 공고 제2022-501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말소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18.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00-1-전라북도 - 102호
2. 단체명칭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3. 소재지 : 전북 군산시 구영1길 11-4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강 태 호
 - 생 년 월 일 : 1961. 5. 19
 - 주 소 : 전북 군산시 나포면 옥곤문화1길 31
5. 주된 사업
 -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참여를 통한 지역사업 등
6. 말소 일자 : 2022. 3. 15.

전라북도 공고 제2022-522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2년 3월 18일

공고사항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등록일
제2022-1- 전라북도- 10호	임실군지속 가능 발전협의회	김운배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지하 1층	○임실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사업 ○환경교육사업 등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2022. 3. 15.

전라북도 공고 제2022-542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18.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03-1-전라북도-30호
2. 단체명칭 : 익산YWCA
3. 소재지 : 전북 익산시 평동로 649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손 계 영
 - 생 년 월 일 : 1952. 1. 7.
 - 주 소 : 전북 익산시 선화로 29길 4
5. 주된 사업
 - 사회운동, 자원봉사활동, 여성지위향상사업 등
6. 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고 혜 정	손 계 영	

7. 허가(변경)일자 : 2022. 3. 16.

전라북도 공고 제2022-543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동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표자) 변경을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3. 18.
전라북도지사

- 1. 등록번호 : 제2000-1-전라북도-15호
- 2. 단체명칭 :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 3.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동 가련산로 18 리더빌딩 402호
- 4. 대표자 인적사항
 - 성 명 : 온 정 이
 - 생 년 월 일 : 1960. 11. 16.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102
- 5. 주된 사업
 - 여성권익증진사업
- 6. 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김 경 희	온 정 이	

- 7. 허가(변경)일자 : 2022. 3. 16.

전라북도 공고 제2022-545호

도로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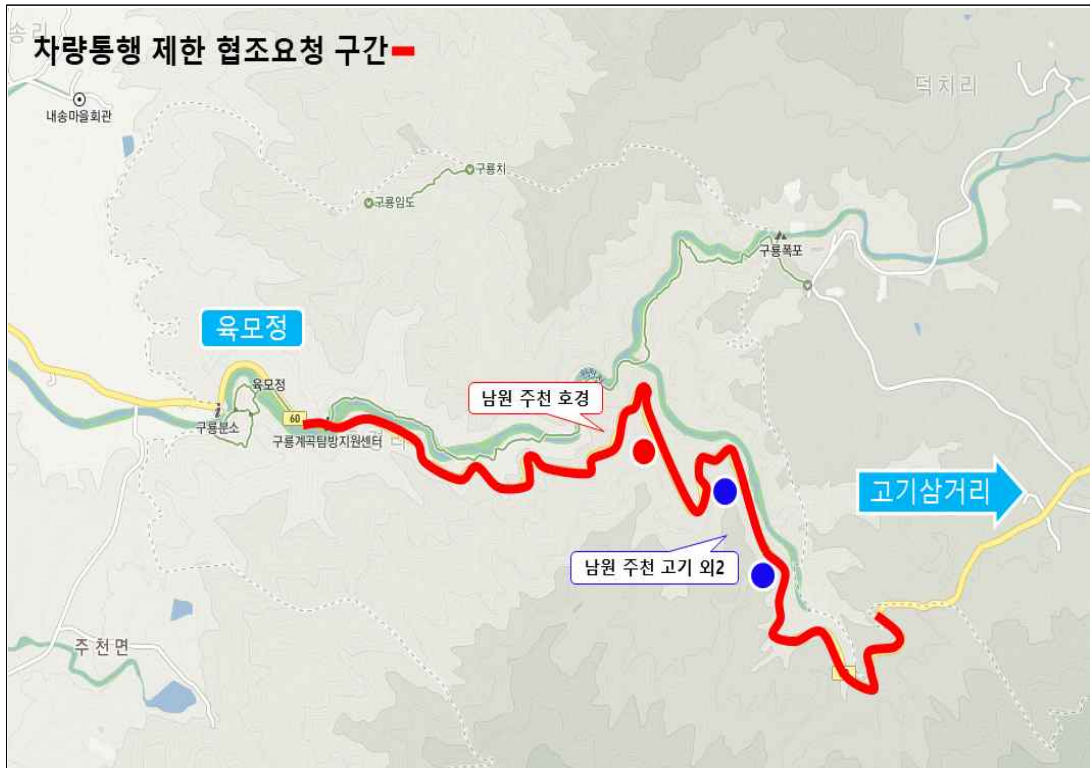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2021년 지방도 수해복구공사(남원 주천 호경)와 관련 일부구간에 대하여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전라북도지사

도로의 종류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노선명	무안~부산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차량	구간	전북 남원시 주천면 육모정입구~ 전북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호랑골 가든 앞
기간	2022년 3월 21일 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이유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고기리 수해복구공사 관련 대형장비 투입 및 낙석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육모정입구 ~ 호랑골가든 앞 구간 도로를 통행 제한		
그 밖의 사항	통행제한 기간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공 사 안 내 문
(공사구간 내 교통 통제)

- 공 사 명 : 2021년 지방도 수해복구공사(남원 주천 호경)
- 통제목적 : 대형장비 투입 및 낙석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
- 위 치 도



- 도로통제 구간
 - 차로 통제 : 육모정 입구 ~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산53-3(호랑골 가든 앞)
 - 통제 기간 : 2022.03.21. ~ 2022.03.31.
 - ※ 통행제한 기간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불편사항 연락처
 - 시 행 청 :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 063-290-6728)

전라북도 공고 제2022-548호

도로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방도 722호선(왕궁농공단지 인근) 비탈면 보강공사와 관련 일부구간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전라북도지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722호선	노선명	용포 ~ 왕궁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차량	구간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로
기간	2022년 3월 17일 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이유	익산시 왕궁면 지방도 722호선(왕궁농공단지 인근) 비탈면 보강공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 통행 제한		
그 밖의 사항	통행제한 기간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사 안내문
(공사구간 내 교통 통제)

- 공사명 : 지방도 722호선(왕궁농공단지 인근) 비탈면 보강공사
- 통제목적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로 비탈면 보강공사 추진
- 위치도



- 도로통제 구간
 - 차로 통제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로
 - 통제 기간 : 2022.03.17. ~ 2022.04.15.
 - ※ 통행제한 기간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불편사항 연락처
 - 시행청 :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 063-290-6728)

도지사 지시사항

◇ 2022. 3. 14.(월)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2 -23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공모 선정 후속조치 철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해수부 공모 선정(3.8.)</p> </div> <p>○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내 수산분야 연구지원 및 수산식품가공업 현대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 지방재정부자심사(중앙) 등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 새민금산단 2공구(군산)에 '25년까지 380억원(국 266, 도 34, 시 80) 투입하여 수산물 생산·가공·소비의 스마트 자동화 체계 인프라 구축</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수산정책과 / 협조 :)</p>
2022 -24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준비 철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3.25.)</p> </div> <p>○ 우리 도 탄소중립 실현 이행기반을 위한 도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조례 제정 등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p> <p>- 특히, 탄소중립은 인식확산과 실천이 중요하므로 도민의 탄소중립 인식확산·실천 촉진을 위해 도민들에게 우리 도 탄소중립 추진방향 및 준비상황, 도민 참여방향 등을 적극 홍보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자연생태과 / 협조 : 전 실·국)</p>
2022 -25	민원해결 역량 강화 방안 마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권익위원회 ‘민원 급속 증가 추세, 민원 해결 시스템 고도화에 집중’</p> </div> <p>○ 도민의 다양한 요구와 높아진 기대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춰 우리 도 민원행정의 전반적인 처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도 차원의 민원해결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p>- 또한, 도민 불편·불만사항 및 신고 등에 적극행정의 자세로 민원처리 할 수 있도록 직원 인식·행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p> <p>* 자치행정과 민원실 접수 처리, 직소·온라인 상담민원, 감사관실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프로세스 포함하여 보고</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자치행정과 / 협조 : 정무기획과, 감사관)</p>
	당면·현안업무	<p>○ 새 정부 출범 총력 대응</p> <p>- 대선이 끝나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새정부 정책대응추진단(가칭, 단장: 행정부지사)을 구성하여 조직적·전략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 동향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 부처와 적극 소통하기 바람.</p> <p>-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업은 구체화 및 논리를 보강하고 추가 현안사업도 발굴하여 인수위 건의 등을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하여 신속 대응하기 바람.</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 실·국 / 협조 :)</p>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당면·현안업무	<p>○ 새만금 집중 홍보</p> <p>- 새만금 내부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포함되어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므로 꿈과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투자유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캠퍼버리를 포함하여 적극 홍보하기 바람.</p> <p>*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등 (주관 : 새만금개발과 / 협조 : 공보관, 캠퍼리지원단, 홍보기획과)</p> <hr/> <p>○ 코로나19 대응 철저</p> <p>- 대선 및 개학으로 다중 밀집과 외출·모임이 많아져 확진자가 늘고 가족간 전파 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나, 방역관리를 개인 자율에 맡기고 있는 만큼 의심 증상 시 반드시 검사를 받고 확진 시 주변에게 알리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적극 안내하기 바람.</p> <p>- 봄철 축제·행사 취소에도 불구하고 벚꽃 명소 등 주요관광지에 상춘객이 밀집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자제 안내, 방문객 분산 유도, 교통혼잡 대응 등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p>(주관 : 사회재난과, 감염병관리과 / 협조 : 안전정책관, 관광총괄과)</p> <hr/> <p>○ 도정 역동성 확보 등 현장행정 추진 강화</p> <p>- 민선7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이므로 도정 주요성과 및 정책점검을 위한 현장위주의 점검을 적극 추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정의 활력 제고 및 역동성 확보방안도 강구하기 바람.</p> <p>(주관 : 전 실·국 / 협조 :)</p> <hr/> <p>○ 전기차 충전소 주차 갈등 해소방안 검토</p> <p>- 최근 전기차량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여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기차 충전 및 주차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갈등 해소방안을 검토하기 바람.</p> <p>(주관 : 자연생태과 / 협조 :)</p>

전주시 공고 제2022 - 719호

전주 도시계획시설(덕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전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고시된 덕진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아래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3월 18일
전 주 시 장

■ 전주 도시계획시설(덕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덕진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덕진 공원	근린 공원	덕진동 일부지역	3,557,054	-	3,557,054	총독부 제403호 (1988.5.8.)	

2. 도시계획시설(덕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 “변경”

시설구분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원 전체면적	3,557,054.00	-	3,557,054.00	56,664.87	증)53.22	56,718.09	95,867.38	증)3,746.00	99,613.38	시설률 :26.08% 건폐율 : 1.59%
시설부지면적	930,420.20	감)2,844.00	927,576.20	56,664.87	증)53.22	56,718.09	95,867.38	증)3,746.00	99,613.38	
도로 및 광장	163,064.00	증)300.00	163,364.00	-	-	-	-	-	-	
조경시설	125,809.00	-	125,809.00	-	-	-	-	-	-	
휴양시설	65,178.00	-	65,178.00	3,562.51	-	3,562.51	5,330.37	-	5,330.37	
유희시설	3,275.00	-	3,275.00	230.33	-	230.33	261.70	-	261.70	
운동시설	109,968.00	-	109,968.00	18,571.33	-	18,571.33	22,316.58	-	22,316.58	
교양시설	416,969.21	감)1,318.00	415,651.21	32,554.16	증)53.22	32,607.38	66,130.09	증)3,746.00	69,876.09	
편익시설	39,206.99	감)1,826.00	37,380.99	1,236.94	-	1,236.94	1,236.94	-	1,236.94	
관리시설	1,170.00	-	1,170.00	509.60	-	509.60	591.70	-	591.70	
그밖의시설	5,780.00	-	5,780.00	-	-	-	-	-	-	
녹 지	2,626,633.80	증)2,844.00	2,629,477.80	-	-	-	-	-	-	녹지율:73.92%

나. 공원조성계획 시설별 결정(변경) 세부조서 : "변경"

시설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557,054.00	-	3,557,054.00	56,664.87	증)53.22	56,718.09	95,867.38	증)3,746.00	99,613.38	
	시설면적 총계	930,420.20	감)2,844.00	927,576.20	56,664.87	증)53.22	56,718.09	95,867.38	증)3,746.00	99,613.38	
도로 및 광장	소 계	163,064.00	증)300.00	163,364.00	-	-	-	-	-	-	
	도로	160,766.00	증)300.00	161,066.00	-	-	-	-	-	-	
	광장	2,298.00	-	2,298.00	-	-	-	-	-	-	
조경 시설	소 계	125,809.00	-	125,809.00	-	-	-	-	-	-	
	잔디밭	34,579.00	-	34,579.00	-	-	-	-	-	-	
	덕진호수	91,230.00	-	91,230.00	-	-	-	-	-	-	
휴양 시설	소 계	65,178.00	-	65,178.00	3,562.51	-	3,562.51	5,330.37	-	5,330.37	
	오송재생태계복원	6,213.00	-	6,213.00	-	-	-	-	-	-	
	휴게소	250.00	-	250.00	-	-	-	-	-	-	
	시민공원	57,671.00	-	57,671.00	3,442.51	-	3,442.51	5,210.37	-	5,210.37	
	사랑늪색나눔숲	389.00	-	389.00	-	-	-	-	-	-	
유희 시설	경로당	655.00	-	655.00	120.00	-	120.00	120.00	-	120.00	
	소 계	3,275.00	-	3,275.00	230.33	-	230.33	261.70	-	261.70	
	드림랜드	3,275.00	-	3,275.00	230.33	-	230.33	261.70	-	261.70	
	소 계	109,968.00	-	109,968.00	18,571.33	-	18,571.33	22,316.58	-	22,316.58	
운동 시설	체련공원	50,737.00	-	50,737.00	3,468.14	-	3,468.14	4,180.92	-	4,180.92	
	승마장	20,711.00	-	20,711.00	4,229.14	-	4,229.14	4,997.14	-	4,997.14	
	살내롤리스케이트장	8,347.00	-	8,347.00	3,585.00	-	3,585.00	4,204.00	-	4,204.00	
	롤리스케이트장	14,607.00	-	14,607.00	486.40	-	486.40	595.60	-	595.60	
	주차장	169.00	-	169.00	-	-	-	-	-	-	
	전주국민체육센터	4,754.00	-	4,754.00	2,991.73	-	2,991.73	4,528.00	-	4,528.00	
	다목적운동장2	1,100.00	-	1,100.00	65.00	-	65.00	65.00	-	65.00	
	족구장	3,843.00	-	3,843.00	30.00	-	30.00	30.00	-	30.00	
	게이트볼장	5,700.00	-	5,700.00	3,715.92	-	3,715.92	3,715.92	-	3,715.92	
	소 계	416,969.21	감)1,318.00	415,651.21	32,554.16	증)53.22	32,607.38	66,130.09	증)3,746.00	69,876.09	
교양 시설	동물원	187,575.00	-	187,575.00	8,785.02	-	8,785.02	9,137.01	-	9,137.01	
	조경단	14,180.00	-	14,180.00	140.00	-	140.00	140.00	-	140.00	
	기념비및사적	1,778.00	-	1,778.00	386.21	-	386.21	386.21	-	386.21	
	덕진종합회관	14,690.00	-	14,690.00	2,481.21	-	2,481.21	7,124.91	-	7,124.91	
	도립국악원	6,797.00	감)1,318.00	5,479.00	1,049.04	증)53.22	1,102.26	2,555.04	증)3,746.00	6,301.04	
	어린이회관	46,382.00	-	46,382.00	3,173.16	-	3,173.16	5,170.33	-	5,170.33	
	보훈공원	30,366.00	-	30,366.00	490.92	-	490.92	490.92	-	490.92	
	소리문화의전당	99,804.21	-	99,804.21	13,698.60	-	13,698.60	36,625.67	-	36,625.67	
	취명회문학공원	1,485.00	-	1,485.00	-	-	-	-	-	-	
	숲속도서관	130.00	-	130.00	50.00	-	50.00	50.00	-	50.00	
	우호도서관	5,359.00	-	5,359.00	800.00	-	800.00	1,500.00	-	1,500.00	
	전통문화회관	8,423.00	-	8,423.00	1,500.00	-	1,500.00	2,950.00	-	2,950.00	
	소 계	39,206.99	감)1,826.00	37,380.99	1,236.94	-	1,236.94	1,236.94	-	1,236.94	
	편의 시설	주차장	36,946.80	감)1,826.00	35,120.80	-	-	-	-	-	-
휴게음식점 및 소매점		1,684.00	-	1,684.00	852.75	-	852.75	852.75	-	852.75	
변 소		384.19	-	384.19	384.19	-	384.19	384.19	-	384.19	
정 자		192.00	-	192.00	-	-	-	-	-	-	
관리 시설	소 계	1,170.00	-	1,170.00	509.60	-	509.60	591.70	-	591.70	
	관리시설	180.00	-	180.00	150.00	-	150.00	232.10	-	232.10	
	관리시설	443.00	-	443.00	135.60	-	135.60	135.60	-	135.60	
	관리시설	413.00	-	413.00	90.00	-	90.00	90.00	-	90.00	
	관리시설	90.00	-	90.00	90.00	-	90.00	90.00	-	90.00	
	관리동	44.00	-	44.00	44.00	-	44.00	44.00	-	44.00	
그 밖의 시설	소 계	5,780.00	-	5,780.00	-	-	-	-	-	-	
	반려견놀이터	5,780.00	-	5,780.00	-	-	-	-	-	-	
	녹 지	2,626,633.80	증)2,844.00	2,629,477.80	-	-	-	-	-	-	

나-1.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시설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규모 및 수량
				기정	증감	변경후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증감	변경후	
합 계				3,557,054.00	-	3,557,054.00	56,664.87	증)53.22	56,718.09	95,867.38	증)3,746.00	99,613.38	132
시설면적총계				930,420.20	감)2,844.00	927,576.20	56,664.87	증)53.22	56,718.09	95,867.38	증)3,746.00	99,613.38	132
도로 및 광장	소 계			163,064.00	증)300.00	163,364.00	-	-	-	-	-	-	
	1	도 로		160,766.00	증)300.00	161,066.00	-	-	-	-	-	-	
	2	광 장		2,298.00	-	2,298.00	-	-	-	-	-	-	
	2-4	교통광장	덕진동2가1-1	2,298.00	-	2,298.00	-	-	-	-	-	-	
조경 시설	소 계			125,809.00	-	125,809.00	-	-	-	-	-	-	
	3	잔디밭		34,579.00	-	34,579.00	-	-	-	-	-	-	
	3-1	잔디밭	덕진동2가176-1	1,784.00	-	1,784.00	-	-	-	-	-	-	
	3-2	잔디광장	덕진동1가367-13	32,715.00	-	32,715.00	-	-	-	-	-	-	
	3-2-1	자전거주차장		80.00	-	80.00	-	-	-	-	-	-	
4	덕진호수	덕진동1가316-2	91,230.00	-	91,230.00	-	-	-	-	-	-		
휴양 시설	소 계			65,178.00	-	65,178.00	3,562.51	-	3,562.51	5,330.37	-	5,330.37	15
	5	오송재 생태계복원		6,213.00	-	6,213.00	-	-	-	-	-	-	
	5-1	호습성수목림	송천동1가3-36	2,358.00	-	2,358.00	-	-	-	-	-	-	
	5-2	수질정화습지	송천동1가3-7	1,734.00	-	1,734.00	-	-	-	-	-	-	
	5-3	낙지다리근력	송천동1가3-31	1,491.00	-	1,491.00	-	-	-	-	-	-	
	5-4	야생초화원	송천동1가9-9	630.00	-	630.00	-	-	-	-	-	-	
	6	휴게소		250.00	-	250.00	-	-	-	-	-	-	
	6-2	휴게소	덕진동1가329	250.00	-	250.00	-	-	-	-	-	-	
	7	시민공원	덕진동1가314-4	57,671.00	-	57,671.00	3,400.38	-	3,400.38	5,168.24	-	5,168.24	14
	7-1	다목적광장		685.00	-	685.00	-	-	-	-	-	-	
	7-2	취향정광장		396.00	-	396.00	36.00	-	36.00	36.00	-	36.00	목조 1
	7-3	상징광장		420.00	-	420.00	-	-	-	-	-	-	
	7-4	잔디광장		284.00	-	284.00	-	-	-	-	-	-	
	7-5	풍월정		239.00	-	239.00	68.00	-	68.00	68.00	-	68.00	철,콘 3
	7-6	보트장		368.00	-	368.00	186.00	-	186.00	186.00	-	186.00	1
	7-6-1	보트장 관리사무소		-	-	-	90.00	-	90.00	90.00	-	90.00	1
	7-7	그 네		92.00	-	92.00	-	-	-	-	-	-	1
	7-8	주차장		1,960.00	-	1,960.00	-	-	-	-	-	-	
	7-9	시계탑		154.00	-	154.00	13.00	-	13.00	13.00	-	13.00	1
	7-10	변 소		70.00	-	70.00	53.00	-	53.00	53.00	-	53.00	철,콘 1
	7-11	여성아동 전용화장실		21.00	-	21.00	21.00	-	21.00	21.00	-	21.00	철,콘 1
	7-12	변 소		95.00	-	95.00	95.00	-	95.00	95.00	-	95.00	철,콘 1
	7-13	변 소		70.00	-	70.00	50.00	-	50.00	50.00	-	50.00	철,콘 1
	7-14	관리사무소		155.00	-	155.00	96.00	-	96.00	96.00	-	96.00	철,콘 1
	7-15	헬 터		324.00	-	324.00	165.00	-	165.00	165.00	-	165.00	목조 8
	7-16	폭 포		250.00	-	250.00	250.00	-	250.00	250.00	-	250.00	FRP 1
	7-17	상징화단		113.00	-	113.00	113.00	-	113.00	113.00	-	113.00	철,콘 1
7-18	꽃화단		500.00	-	500.00	-	-	-	-	-	-		
7-19	정 문		123.00	-	123.00	24.00	-	24.00	24.00	-	24.00	기와 1	
7-20	후 문		20.00	-	20.00	5.00	-	5.00	5.00	-	5.00	기와 1	
7-21	창포물재현장		200.00	-	200.00	-	-	-	-	-	-		
7-22	데 크		294.00	-	294.00	438.00	-	438.00	438.00	-	438.00		
7-22-1	데 크		-	-	-	438.00	-	438.00	438.00	-	438.00	목재 1	
7-22-2	데 크		50.00	-	50.00	-	-	-	-	-	-	목질 복합체 1	
7-22-3	데 크		42.00	-	42.00	-	-	-	-	-	-	목질 복합체 1	
7-22-4	데 크		202.00	-	202.00	-	-	-	-	-	-	목질 1	

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및 수량
				기정	증감	변경후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증감	변경후		
													복합체	
	7-23	음악분수		-	-	-	162.00	-	162.00	162.00	-	162.00		1
	7-23-1	수중무대		-	-	-	162.00	-	162.00	162.00	-	162.00		1
	7-23-2	제어실		43.00	-	43.00	33.03	-	33.03	48.78	-	48.78	철,콘	1
	7-24	기타시설		42,243.00	-	42,243.00	146.73	-	146.73	178.52	-	178.52		1
	7-24-1	도로및광장		9,427.00	-	9,427.00	-	-	-	-	-	-		
	7-24-2	녹지		28,101.82	-	28,101.82	-	-	-	-	-	-		
	7-24-3	맷길숲		4,684.18	-	4,684.18	188.86	-	188.86	220.65	-	220.65		1
	7-24-4	경관조명		30.00	-	30.00	-	-	-	-	-	-		
	7-25	노약복지화관		8,351.00	-	8,351.00	992.62	-	992.62	2,712.94	-	2,712.94	철,콘	1
	7-25-1	노약복지화관		8,351.00	-	8,351.00	992.62	-	992.62	2,712.94	-	2,712.94	철,콘	1
	7-25-2	파고라		-	-	-	-	-	-	-	-	-	목조	1
	7-25-3	파고라		-	-	-	-	-	-	-	-	-	목조	1
	7-25-4	파고라		-	-	-	-	-	-	-	-	-	목조	1
	7-25-5	음수대		-	-	-	-	-	-	-	-	-		1
	7-25-6	주차장		-	-	-	-	-	-	-	-	-		
	7-26	시민갤러리		201.00	-	201.00	201.00	-	201.00	201.00	-	201.00		1
	29	사랑녹색 나눔숲		389.00	-	389.00	-	-	-	-	-	-		
	29-1	진입광장	덕진동1가산2-20	14.00	-	14.00	-	-	-	-	-	-	목질 복합체	1
	29-2	커뮤니티광장	덕진동1가산2-20	240.00	-	240.00	-	-	-	-	-	-	목질 복합체	1
	29-3	쉼터1	덕진동1가산2-20	23.00	-	23.00	-	-	-	-	-	-	목질 복합체	1
	29-4	쉼터2	금암동634-16	82.00	-	82.00	-	-	-	-	-	-	목질 복합체	1
	29-5	쉼터3	덕진동1가산2-1	30.00	-	30.00	-	-	-	-	-	-	목질 복합체	1
	34	경로당		655.00	-	655.00	120.00	-	120.00	120.00	-	120.00	철,콘	1
	소 계			3,275.00	-	3,275.00	230.33	-	230.33	261.70	-	261.70		3
유회 시설	8	드림랜드	덕진동1가73-48	3,275.00	-	3,275.00	230.33	-	230.33	261.70	-	261.70		3
	8-1	관리사무소		-	-	-	70.20	-	70.20	101.57	-	101.57	철,콘	1
	8-2	요술의집		-	-	-	125.55	-	125.55	125.55	-	125.55	조적조	1
	8-3	화장실		-	-	-	34.58	-	34.58	34.58	-	34.58	조적조	1
	8-4	비룡열차		-	-	-	-	-	-	-	-	-		
	8-5	밧데리카		-	-	-	-	-	-	-	-	-		
	8-6	스포츠카		-	-	-	-	-	-	-	-	-		
	8-7	회전그네		-	-	-	-	-	-	-	-	-		
	8-8	회전목마		-	-	-	-	-	-	-	-	-		
	8-9	허니문		-	-	-	-	-	-	-	-	-		
	8-10	타가다		-	-	-	-	-	-	-	-	-		
8-11	바이킹		-	-	-	-	-	-	-	-	-			
	소 계			109,968.00	-	109,968.00	18,571.33	-	18,571.33	22,316.58	-	22,316.58		17
운동 시설	9-1	체련공원	덕진동1가산2-1	50,737.00	-	50,737.00	3,468.14	-	3,468.14	4,180.92	-	4,180.92	철,콘,목질	4
	9-1-1	실내 배드민턴장		4,325.00	-	4,325.00	3,271.22	-	3,271.22	3,996.26	-	3,996.26		1
	9-1-4	풋살구장		2,686.00	-	2,686.00	-	-	-	-	-	-		
	9-1-5	축구장		25,245.00	-	25,245.00	-	-	-	-	-	-		
	9-1-6	다목적 운동장		10,470.00	-	10,470.00	-	-	-	-	-	-		
	9-1-7	테니스장		7,051.00	-	7,051.00	60	-	60	60	-	60		2
	9-1-11	야외무대		102.00	-	102.00	-	-	-	-	-	-		
	9-1-13	음수대		16.00	-	16.00	-	-	-	-	-	-		
	9-1-14	운동기구		-	-	-	-	-	-	-	-	-		

시설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및 수량
				기정	증감	변경후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증감	변경후		
	9-1-15	다목적구장		705.00	-	705.00	-	-	-	-	-	-		
	9-1-16	살내운동공간		137.00	-	137.00	136.92	-	136.92	124.66	-	124.66		1
	9-2	승마장	호성동1가720-1	20,711.00	-	20,711.00	4,229.14	-	4,229.14	4,997.14	-	4,997.14		8
	9-2-1	육내승마장		-	-	-	2,052.00	-	2,052.00	2,820.00	-	2,820.00	철,콘	1
	9-2-2	마사1		-	-	-	280.80	-	280.80	280.80	-	280.80	철,콘	1
	9-2-3	마사2		-	-	-	1,276.20	-	1,276.20	1,276.20	-	1,276.20	철,콘	1
	9-2-4	창고		-	-	-	198.00	-	198.00	198.00	-	198.00	철,콘	1
	9-2-5	관리사무소		-	-	-	70.65	-	70.65	70.65	-	70.65	벽돌조	1
	9-2-6	퇴비사		-	-	-	40.00	-	40.00	40.00	-	40.00	철,콘	1
	9-2-7	세마장		-	-	-	132.61	-	132.61	132.61	-	132.61	경량 철골	1
	9-2-8	호스위킹장		-	-	-	178.88	-	178.88	178.88	-	178.88	경량 철골	1
	9-3	실내롤러스케이트장	송천동1가234-33	8,347.00	-	8,347.00	3,585.00	-	3,585.00	4,204.00	-	4,204.00		2
	9-3-1	롤러스케이트장		-	-	-	3,248.00	-	3,248.00	3,698.00	-	3,698.00	철,콘	1
	9-3-2	관리사		-	-	-	337.00	-	337.00	506.00	-	506.00	철,콘	1
	9-4	롤러스케이트장		14,607.00	-	14,607.00	486.40	-	486.40	595.60	-	595.60		1
	9-4-1	본부서관람장		486.00	-	486.00	486.40	-	486.40	595.60	-	595.60	철,콘	1
	9-4-2	주경기장		4,735.00	-	4,735.00	-	-	-	-	-	-		
	9-4-3	생활체육경기장		1,653.00	-	1,653.00	-	-	-	-	-	-		
	9-4-4	전시장		907.00	-	907.00	-	-	-	-	-	-		
	9-4-5	주차장		6,826.00	-	6,826.00	-	-	-	-	-	-		
	-	주차장		169.00	-	169.00	-	-	-	-	-	-		
	-	국민체육센터	송천동1가186	4,754.00	-	4,754.00	2,991.73	-	2,991.73	4,528.00	-	4,528.00		
	9-7	다목적운동장2		1,100.00	-	1,100.00	65.00	-	65.00	65.00	-	65.00		1
	9-8	족구장	송천동1가산1-25	3,843.00	-	3,843.00	30.00	-	30.00	30.00	-	30.00		배수시설관리동3
	9-8-1	화장실	송천동1가산1-25	-	-	-	30.00	-	30.00	30.00	-	30.00		
	17-2	게이트볼장		5,700.00	-	5,700.00	3,715.92	-	3,715.92	3,715.92	-	3,715.92	철,콘	1
	소 계				416,969.21	감1,318.00	415,651.21	32,554.16	증153.22	32,607.38	66,130.09	증13,746.00	69,876.09	64
교양 시설	10	동블원	덕진동1가73-48	187,575.00	-	187,575.00	8,785.02	-	8,785.02	9,137.01	-	9,137.01		42
	10-1	동물사	덕진동1가73-48	57,131.50	-	57,131.50	5,703.28	-	5,703.28	6,055.27	-	6,055.27		22
	10-1-1	호랑이사자	덕진동1가73-48	983.00	-	983.00	563.90	-	563.90	599.90	-	599.90	철,콘	1
	10-1-2	표범사	덕진동1가73-48	531.20	-	531.20	231.15	-	231.15	231.15	-	231.15	철,콘	1
	10-1-3	파충류사	덕진동1가73-48	66.00	-	66.00	28.72	-	28.72	28.72	-	28.72	철,콘	1
	10-1-4	소맹수사	덕진동1가73-48	-	-	-	-	-	-	-	-	-		
	10-1-5	곰사	덕진동1가73-48	4,200.00	-	4,200.00	299.55	-	299.55	299.55	-	299.55	철,콘	1
	10-1-6	원숭이사	덕진동1가73-49	1,383.90	-	1,383.90	209.85	-	209.85	232.89	-	232.89	철,콘	1
	10-1-8	마사	덕진동1가73-49	954.00	-	954.00	174.00	-	174.00	174.00	-	174.00	경량 철골	2
	10-1-9	코끼리사	덕진동1가산36-8	1,260.00	-	1,260.00	428.50	-	428.50	633.70	-	633.70	철,콘	1
	10-1-10	하마기린사	덕진동1가73-25	1,651.70	-	1,651.70	883.00	-	883.00	883.00	-	883.00	철,콘	1
	10-1-11	사슴라미사	덕진동1가73-48	1,809.00	-	1,809.00	-	-	-	-	-	-	철책	
	10-1-12	맹금류사	덕진동1가73-35	1,544.00	-	1,544.00	-	-	-	-	-	-	철책	
	10-1-13	공작사	덕진동1가73-48	129.60	-	129.60	-	-	-	-	-	-	철책	
	10-1-14	오리, 물범사	덕진동1가73-56	390.80	-	390.80	-	-	-	-	-	-	철책	
	10-1-15	물새장	덕진동1가73-48	2,083.30	-	2,083.30	36.90	-	36.90	36.90	-	36.90	철책	
	10-1-1	들소	덕진동1가산36-8	1,047.00	-	1,047.00	50.00	-	50.00	50.00	-	50.00	철책	1

시설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및 수량
				기정	증감	변경후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증감	변경후		
	6	큰코뿔사												
	10-1-18	캠겨루, 타조사	덕진동1가 산36-22	701.00	-	701.00	140.00	-	140.00	140.00	-	140.00	철,콘	1
	10-1-19	해양동물사	덕진동1가73-35	860.00	-	860.00	180.84	-	180.84	180.84	-	180.84	철골조	1
	10-1-20	파나코사	덕진동1가73-48	1,927.00	-	1,927.00	124.80	-	124.80	124.80	-	124.80		2
	10-1-22	건사	덕진동1가산2-19	63.00	-	63.00	-	-	-	-	-	-		
	10-1-23	집비둘기사	덕진동1가산2-19	30.00	-	30.00	-	-	-	-	-	-		
	10-1-24	조류사	덕진동1가73-41	720.00	-	720.00	198.00	-	198.00	198.00	-	198.00	철,콘	1
	10-1-25	아기동물놀이방	덕진동1가73-41	797.00	-	797.00	180.63	-	180.63	165.00	-	165.00	철,콘	1
	10-1-26	늑대사		2,600.00	-	2,600.00	-	-	-	-	-	-		
	10-1-27	시베리아호랑이사	덕진동1가산2-19	4,722.00	-	4,722.00	257.16	-	257.16	257.16	-	257.16	철,콘	1
	10-1-28	원숭이사2	덕진동1가73-59	3,430.00	-	3,430.00	282.34	-	282.34	282.34	-	282.34	철,콘	3
	10-1-29	코끼리사2	덕진동1가73-25	7,409.00	-	7,409.00	647.76	-	647.76	647.76	-	647.76	철,콘	1
	10-1-30	초원의숲	덕진동1가73-41	10,766.00	-	10,766.00	786.18	-	786.18	889.56	-	889.56	철,콘	1
	10-1-31	독수리사	덕진동1가산2-19	5,063.00	-	5,063.00	-	-	-	-	-	-	철,책	
	10-2	동물병원	덕진동1가산2-19	420.00	-	420.00	330.00	-	330.00	330.00	-	330.00	철,콘	1
	10-3	매표소	덕진동1가73-1	79.00	-	79.00	78.12	-	78.12	78.12	-	78.12	기와	1
	10-4	휴게음식점	덕진동1가산36-8	68.00	-	68.00	32.70	-	32.70	32.70	-	32.70	경량철골	1
	10-5	관리사무소	덕진동1가산2-19	192.00	-	192.00	191.25	-	191.25	191.25	-	191.25	철,콘	1
	10-6	화장실	덕진동1가산2-19	1,549.00	-	1,549.00	465.68	-	465.68	465.68	-	465.68	철,콘	6
	10-7	육추실	덕진동1가73-48	-	-	-	36.90	-	36.90	36.90	-	36.90	조적조	1
	10-8	물세장, 물탱크	덕진동1가73-48	-	-	-	112.00	-	112.00	112.00	-	112.00	철,콘	1
	10-10	영상관	덕진동1가75	500.00	-	500.00	330.00	-	330.00	330.00	-	330.00	철,콘	1
	10-13	휴게소	덕진동1가73-37	550.00	-	550.00	496.00	-	496.00	496.00	-	496.00		
	10-14	관리사무소	덕진동1가75	720.00	-	720.00	660.00	-	660.00	660.00	-	660.00		
	10-15	유모차보관소	덕진동1가75	67.00	-	67.00	66.88	-	66.88	66.88	-	66.88	철골조	1
	10-16	저온창고	덕진동1가73-41	49.00	-	49.00	48.20	-	48.20	48.20	-	48.20	철골조	2
	10-18	기념품판매소	덕진동1가73-1	32.00	-	32.00	32.34	-	32.34	32.34	-	32.34	경량철골	1
	10-19	기타시설	덕진동1가73-48	125,634.50	-	125,634.50	-	-	-	-	-	-		
	10-20	매점	덕진동1가73-49	33.00	-	33.00	33.00	-	33.00	33.00	-	33.00	경량철골	1
	10-21	축산분뇨처리장	덕진동1가73-58	165.00	-	165.00	-	-	-	-	-	-		
	10-22	사육사격업장	덕진동1가산36-8	170.00	-	170.00	61.19	-	61.19	61.19	-	61.19	경량철골	1
	10-23	관평안내소	덕진동1가73-46	215.00	-	215.00	107.48	-	107.48	107.48	-	107.48	철골조	1
	12	조정단		14,180.00	-	14,180.00	140.00	-	140.00	140.00	-	140.00	목조	1
	13	기념비 및 사적		1,778.00	-	1,778.00	386.21	-	386.21	386.21	-	386.21		2
	13-1	시민헌장비	덕진동1가1314-4	-	-	-	3.00	-	3.00	3.00	-	3.00	석조	1

시설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 지 면 적 (㎡)			시 설 면 적 (㎡)						구 조	규모 및 수량
				기 정	증 감	변경후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 정	증 감	변경후		
13-2	자연보호 현장비	잔디밭 3-2	-	-	-	10.00	-	10.00	10.00	-	10.00	석조	1	
13-3	어린이 현장비	덕진동1가 1314-4	-	-	-	15.00	-	15.00	15.00	-	15.00	석조	1	
13-4	신석정시비	덕진동1가 산23-13	-	-	-	14.00	-	14.00	14.00	-	14.00	석조	1	
13-5	희명회장군 공적비	덕진동1가 1314-4	-	-	-	6.00	-	6.00	6.00	-	6.00	석조	1	
13-6	민재선선생 유허비	덕진동1가 1314-4	-	-	-	9.00	-	9.00	9.00	-	9.00	석조	1	
13-7	전봉준장군 동상	덕진동1가 1314-4	-	-	-	6.00	-	6.00	6.00	-	6.00	석조	1	
13-8	김일두선생 기념비	덕진동1가 1314-4	-	-	-	6.00	-	6.00	6.00	-	6.00	석조	1	
13-9	취향정	덕진동1가1314-4	-	-	-	36.00	-	36.00	36.00	-	36.00		1	
13-11	수직사	덕진동1가89-1	1,080.00	-	1,080.00	74.00	-	74.00	74.00	-	74.00		1	
13-12	제일동포 기념비	덕진동1가 산2-1	635.00	-	635.00	6.00	-	6.00	6.00	-	6.00	석조	1	
13-13	이철균 선생비	덕진동1가 산23-13	-	-	-	15.00	-	15.00	15.00	-	15.00	석조	1	
13-14	김해강 선생비	덕진동1가 산23-13	-	-	-	15.00	-	15.00	15.00	-	15.00	석조	1	
13-15	김계남 장군유모비	덕진동1가 1314-8	-	-	-	15.00	-	15.00	15.00	-	15.00	석조	1	
13-16	덕진공원비	덕진동1가1314-1	-	-	-	15.00	-	15.00	15.00	-	15.00	석조	1	
13-17	손화중 장군비	덕진동1가 1314-8	-	-	-	9.00	-	9.00	9.00	-	9.00	석조	1	
13-18	3연대 창설비	잔디밭 3-2	-	-	-	25.00	-	25.00	25.00	-	25.00	석조	1	
13-19	로타리 클럽비	축구장앞	-	-	-	9.00	-	9.00	9.00	-	9.00	석조	1	
13-20	법조3 성인비	덕진동 1가1316-2	-	-	-	9.00	-	9.00	9.00	-	9.00	석조	1	
13-21	박동화 선생비	잔디밭 3-2	-	-	-	6.00	-	6.00	6.00	-	6.00	석조	1	
13-22	이삼만 서예비	잔디밭 3-2	-	-	-	9.42	-	9.42	9.42	-	9.42	석조	1	
13-23	백양춘 선생비	덕진동 1가1314-4	-	-	-	5.04	-	5.04	5.04	-	5.04	석조	1	
13-24	전라북도 월남참전 기념비	덕진동 1가73-9	63.00	-	63.00	62.75	-	62.75	62.75	-	62.75	철골조 석조	1	
13-25	전간제선생 유허비	덕진동 1가1314-4	-	-	-	6.00	-	6.00	6.00	-	6.00	석조	1	
14	덕진 종합회관	덕진동 1가190-1	14,690.00	-	14,690.00	2,481.21	-	2,481.21	7,124.91	-	7,124.91		4	
14-1	덕진 종합회관		-	-	-	1,311.00	-	1,311.00	3,811.00	-	3,811.00	철,콘	1	
14-2	경비실		-	-	-	20.00	-	20.00	20.00	-	20.00	세벽 SLB	1	
14-3	문예회관		-	-	-	234.00	-	234.00	702.00	-	702.00	철,콘	1	
14-4	주차장		-	-	-	-	-	-	-	-	-			
14-5	공연장		-	-	-	916.21	-	916.21	2,591.91	-	2,591.91	철,콘, 철골	1	
16	도립국악원	덕진동2가184-1	6,797.00	감1,318.00	5,479.00	1,049.04	증53.22	1,102.26	2,555.04	증3,746.00	6,301.04	철,콘, 철골	1	
16-1	도립국악원1		2,108.00	감2,108.00	-	666.00	감666.00	-	2,172.00	감2,172.00	-	-	-	
16-2	도립국악원2		4,689.00	감4,689.00	-	383.04	감383.04	-	383.04	감383.04	-	-	-	
17	어린이회관	송천동1가234-5	46,382.00	-	46,382.00	3,173.16	-	3,173.16	5,170.33	-	5,170.33		2	
17-1	본 관		9,498.00	-	9,498.00	3,164.75	-	3,164.75	5,161.92	-	5,161.92	가설 건축물	2	

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및 수량
				기정	증감	변경후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증감	변경후		
	17-3	야외무대		276.00	-	276.00	-	-	-	-	-	-		
	17-4	주차장		293.00	-	293.00	-	-	-	-	-	-		
	17-5	주차장2		1,375.00	-	1,375.00	-	-	-	-	-	-		
	17-6	주차장3		4,777.00	-	4,777.00	-	-	-	-	-	-		
	17-7	기타시설		30,163.00	-	30,163.00	8.41	-	8.41	8.41	-	8.41	판넬	1
	18	보훈공원	송천동1가234-16	30,366.00	-	30,366.00	490.92	-	490.92	490.92	-	490.92		3
	18-1	독립운동 기념광장		3,398.00	-	3,398.00	165.00	-	165.00	165.00	-	165.00		2
	18-1-1	기념탑		396.00	-	396.00	-	-	-	-	-	-		1
	18-1-2	변 소		30.00	-	30.00	30.00	-	30.00	30.00	-	30.00	조적조	1
	18-1-3	독립운동 진시관		438.00	-	438.00	135.00	-	135.00	135.00	-	135.00		1
	18-2	진입광장		777.00	-	777.00	-	-	-	-	-	-		
	18-3	주차장		1,401.00	-	1,401.00	-	-	-	-	-	-		
	18-4	황극단		472.00	-	472.00	-	-	-	-	-	-		
	18-5	교육체험광장		4,020.00	-	4,020.00	325.92	-	325.92	325.92	-	325.92		1
	18-5-1	진시관		-	-	-	325.92	-	325.92	325.92	-	325.92		1
	18-6	국기수호 기억광장		3,668.00	-	3,668.00	-	-	-	-	-	-		
	18-7	추모광장		2,486.00	-	2,486.00	-	-	-	-	-	-		
	18-8	기타시설		14,144.00	-	14,144.00	-	-	-	-	-	-		
	20	소리문화의 전당	덕진동 1가88-4	99,804.21	-	99,804.21	13,698.60	-	13,698.60	36,625.67	-	36,625.67		6
	20-1	공연장		-	-	-	8,827.71	-	8,827.71	25,265.36	-	25,265.36	철,콘	1
	20-2	국세회의장/진시관		-	-	-	2,822.48	-	2,822.48	6,892.43	-	6,892.43	철,콘	1
	20-3	국악당		-	-	-	1,636.53	-	1,636.53	3,831.89	-	3,831.89	철,콘	1
	20-4	야외공연장		-	-	-	185.40	-	185.40	433.80	-	433.80	철,콘	1
	20-5	진입광장		-	-	-	-	-	-	-	-	-		
	20-6	중앙광장		-	-	-	-	-	-	-	-	-		
	20-7	놀이마당		-	-	-	-	-	-	-	-	-		
	20-8	주차장		-	-	-	-	-	-	-	-	-		
	20-9	주차장		-	-	-	-	-	-	-	-	-		
	20-10	주차장		-	-	-	-	-	-	-	-	-		
	20-11	주차장		-	-	-	-	-	-	-	-	-		
	20-12	야외화장실		-	-	-	131.55	-	131.55	114.69	-	114.69	철,콘	1
	20-13	야외화장실		-	-	-	94.93	-	94.93	87.50	-	87.50	철,콘	1
	21	최명희 문학공원	덕진동1가 산36-26	1,485.00	-	1,485.00	-	-	-	-	-	-		
	30	숲속도서관	인후동2가산2-19	130.00	-	130.00	50.00	-	50.00	50.00	-	50.00	목조	1
	31	우호도서관	호성1동728	5,359.00	-	5,359.00	800.00	-	800.00	1,500.00	-	1,500.00		1
	33	점동문화회관	송천동1가241-2	8,423.00	-	8,423.00	1,500.00	-	1,500.00	2,950.00	-	2,950.00		1
	소 계			39,206.99	감1,826.00	37,380.99	1,236.94	-	1,236.94	1,236.94	-	1,236.94		27
	22	주차장		36,946.80	감1,826.00	35,120.80	-	-	-	-	-	-		
	22-1	주차장	덕진동2가184-1	1,826.00	감1,826.00	-	-	-	-	-	-	-		
	22-4	주차장	덕진동1가산2-1	4,408.00	-	4,408.00	-	-	-	-	-	-		
	22-5	주차장	정구정앞	3,714.00	-	3,714.00	-	-	-	-	-	-		
	22-8	주차장	덕진동1가72-5	13,709.80	-	13,709.80	-	-	-	-	-	-		
	22-9	주차장	덕진동1가72-5	5,398.00	-	5,398.00	-	-	-	-	-	-		
	22-10	주차장	덕진동1가72-5	3,701.00	-	3,701.00	-	-	-	-	-	-		
	22-11	주차장	덕진동1가산31	4,190.00	-	4,190.00	-	-	-	-	-	-		
	23	휴게음식점 및소매점		1,684.00	-	1,684.00	852.75	-	852.75	852.75	-	852.75		22
	23-1	연화정	덕진호수내	1,225.00	-	1,225.00	393.75	-	393.75	393.75	-	393.75	한옥	1
	23-5	매 점	채탄공원내	201.00	-	201.00	201.00	-	201.00	201.00	-	201.00	철,콘	1

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및 수량
				기정	증감	변경후	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증감	변경후		
	23-6	매점	덕진동1가73-22	24.00	-	24.00	24.00	-	24.00	24.00	-	24.00		8
	23-7	매점	덕진동1가73-13	198.00	-	198.00	198.00	-	198.00	198.00	-	198.00		11
	23-8	휴게음식점 및소매점	덕진동1가656-19	36.00	-	36.00	36.00	-	36.00	36.00	-	36.00	조립식	1
	24	변소		384.19	-	384.19	384.19	-	384.19	384.19	-	384.19		5
	24-2	변소	체련공원내	119.00	-	119.00	119.00	-	119.00	119.00	-	119.00	철,콘	1
	24-3	화장실	체련공원내	80.00	-	80.00	80.00	-	80.00	80.00	-	80.00		1
	24-4	화장실	송천동1가164-4	45.00	-	45.00	45.00	-	45.00	45.00	-	45.00		1
	24-5	화장실	덕진동1가산30	80.00	-	80.00	80.00	-	80.00	80.00	-	80.00		1
	24-6	화장실	호성동1가산29-1	60.19	-	60.19	60.19	-	60.19	60.19	-	60.19	철,콘	1
	26	진망대		-	-	-	-	-	-	-	-	-		
	26-1	진망대	백동로	-	-	-	-	-	-	-	-	-	목조	
	26-2	진망대	천마산, 기린로	-	-	-	-	-	-	-	-	-	목조	
	26-3	진망대	천마산	-	-	-	-	-	-	-	-	-	목조	
	26-4	진망대	천마산	-	-	-	-	-	-	-	-	-	목조	
	28	정자		192.00	-	192.00	-	-	-	-	-	-		
	28-5	쉼터	덕진동1가산37	91.00	-	91.00	-	-	-	-	-	-		1
	28-6	쉼터	덕진동1가 637-26	80.00	-	80.00	-	-	-	-	-	-		1
	28-7	쉼터	덕진동1가656-5	21.00	-	21.00	-	-	-	-	-	-		1
	소계			1,170.00	-	1,170.00	509.60	-	509.60	591.70	-	591.70		6
관리 시설	27-2	관리시설	체련공원내	180.00	-	180.00	150.00	-	150.00	232.10	-	232.10	철,콘	1
	27-3	관리시설	체련공원내 (테니스장)	443.00	-	443.00	135.60	-	135.60	135.60	-	135.60	철,콘	2
	27-4	관리시설	체련공원내 (족구장)	413.00	-	413.00	90.00	-	90.00	90.00	-	90.00	철,콘	1
	27-5	관리시설	체련공원내 (다목적운동장)	90.00	-	90.00	90.00	-	90.00	90.00	-	90.00	철,콘	1
	27-6	관리동	덕진동1가 656-19	44.00	-	44.00	44.00	-	44.00	44.00	-	44.00	조립식	1
	소계			5,780.00	-	5,780.00	-	-	-	-	-	-		-
녹지	35	관리건 물터	덕진동1가656-5	5,780.00	-	5,780.00	-	-	-	-	-	-		
	소계			2,626,633.80	증)2,844.00	2,629,477.80	-	-	-	-	-	-		
	녹지			2,626,633.80	증)2,844.00	2,629,477.80	-	-	-	-	-	-		

다. 도로 결정조서 : “변경”

1) 공원시설 도로 결정 총괄조서 : “변경”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4 류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	연장 (m)	면적 (㎡)	
기정	합 계	78	26,831	160,766	4	948	11,860	6	5,621	67,685	14	3,693	41,080	11	2,909	11,585
변경	합 계	78	26,831	161,066	4	948	11,860	6	5,621	67,985	14	3,693	41,080	11	2,909	11,585
기정	대 로	2	1,649	45,914	-	-	-	1	877	23,413	1	772	22,501	-	-	-
기정	중 로	5	4,828	44,801	1	156	3,120	3	3,720	35,969	1	952	5,712	-	-	-
변경	중 로	5	4,828	45,101	1	156	3,120	3	3,720	36,269	1	952	5,712	-	-	-
기정	소 로	28	6,694	41,495	3	792	8,740	2	1,024	8,303	12	1,969	12,867	11	2,909	11,585
기정	등산로	36	12,191	24,383	-	-	-	-	-	-	-	-	-	-	-	-
기정	산책로	7	1,469	4,173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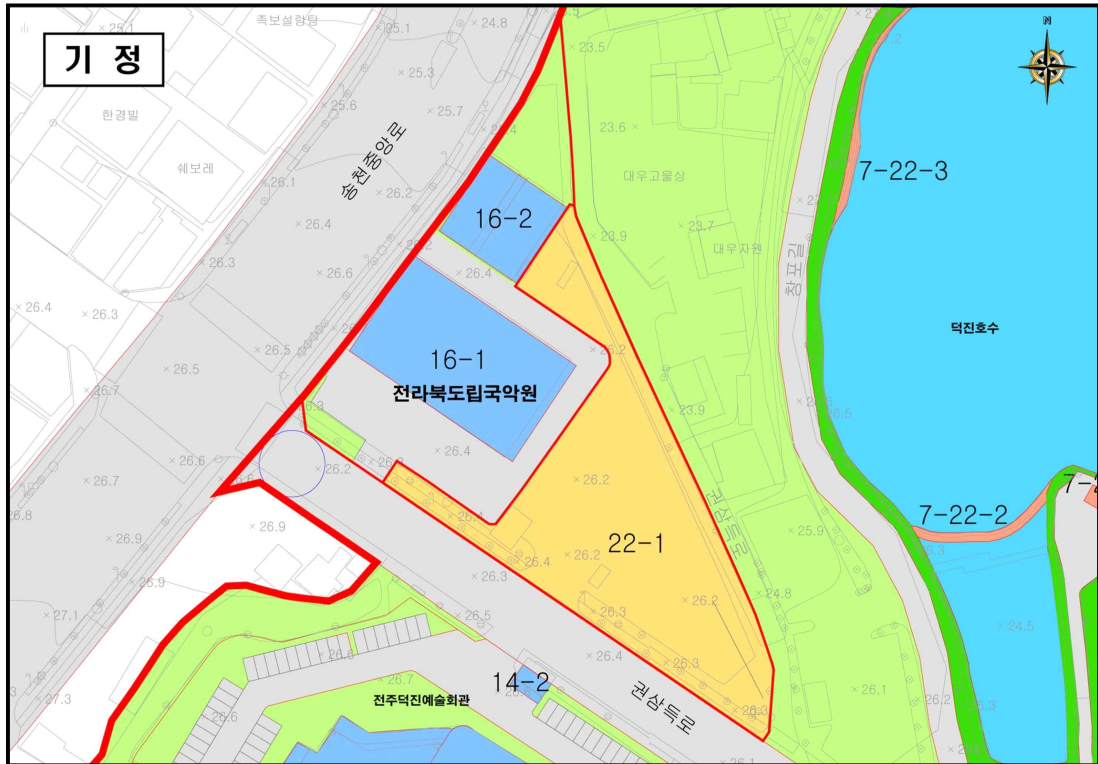
2) 공원시설 도로 결정 세부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연 장 (m)	면 적 (㎡)	기 능	시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총 계				26,831	160,766				
변경	총 계				26,831	161,066				
소 계		대로 (2개노선)			1,649	45,914				
기정	대로	2	1	25	877	23,413	일반도로	덕진동구역계	덕진동1가39-1	
기정	대로	3	1	25	772	22,501	일반도로	-	-	
기정	소 계	중로 (5개노선)			4,828	44,801				
변경	소 계	중로 (5개노선)			4,828	45,101				
기정	중로	1	1	20	156	3,120	일반도로	대2-1	어린이회관 정문	
기정	중로	2	1	15	505	7,575	일반도로	덕진동구역계	덕진동구역계	
변경	중로	2	1	15 ¹⁷	505	7,875	일반도로	덕진동구역계	덕진동구역계	
기정	중로	2	2	15	1,580	23,903	일반도로	대3-1	중2-3	
기정	중로	2	3	15	1,635	4,491	일반도로	중3-1	덕진동1가구역계	
기정	중로	3	7	12	952	5,712	일반도로	송천동1가구역계	대3-1	
소 계		소로 (28개노선)			6,694	41,495				
기정	소로	1	2	10.0	405	4,033	일반도로	중2-2	다목적잔디밭	
기정	소로	1	4	11.5	342	4,233	일반도로	중2-1	덕진동구역계	
기정	소로	1	5	10.0	45	474	일반도로	중1-1	전통문화회관	
기정	소로	2	1	8.5~10.0	413	3,962	일반도로	덕진동구역계	소로2-2	
기정	소로	2	2	8.0~10.0	611	4,341	보행자도로	중2-1종	소2-1종	
기정	소로	3	2	6.0	170	1,020	일반도로	대3-1	수직사 입구	
기정	소로	3	5	6.0	270	1,620	일반도로	광장2-1	식물원 경계지	
기정	소로	3	6	6.0	180	1,080	일반도로	광장2-4	독립기념탑	
기정	소로	3	7	6.0	172	1,032	일반도로	중2-2	소3-8	
기정	소로	3	8	6.0	130	780	일반도로	소3-8	동물원	
기정	소로	3	9	6.0	91	546	일반도로	소3-7	소3-10	
기정	소로	3	10	6.0	122	732	일반도로	소1-2	주차장22-8	
기정	소로	3	12	5.0	92	460	일반도로	중2-2	관리사무소27-5	
기정	소로	3	13	7.0	411	3,276	일반도로	대2-1	소2-1종	
기정	소로	3	14	7.0	223	1,556	일반도로	대2-1	연화마을취락지구	
기정	소로	3	15	7.0	76	601	일반도로	중2-2	대지마을취락지구	
기정	소로	3	16	5.0	32	164	일반도로	소2-1	덕암마을취락지구	
기정	소로	4	1	4.0	270	1,080	일반도로	소3-4	덕진동1가85-9	
기정	소로	4	2	4.0	473	1,748	일반도로	덕진동1가76-6	대3-1	
기정	소로	4	4	4.0	397	1,661	일반도로	소1-3	전디밭3-2	
기정	소로	4	5	4.0	508	2,032	일반도로	호성동1가863-1 ₂	덕진동1가82-12	
기정	소로	4	6	4.0	53	212	일반도로	중2-2	소3-9	
기정	소로	4	7	4.0	55	220	일반도로	소3-9	소3-5	
기정	소로	4	8	4.0	675	2,700	일반도로	대3-1	등5	
기정	소로	4	9	4.0	120	480	일반도로	중3-7	장덕사 입구	
기정	소로	4	10	4.0	270	1,079	일반도로	송천동1가179-2 ₂	등5	
기정	소로	4	11	4.0	77	308	일반도로	송천동1가234-1 ₀₇		
기정	소로	4	12	4.0	11	65	일반도로	소3-13	덕암마을취락지구	

구분	구 모				연 장 (m)	면 적 (㎡)	기 능	시 점	중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 계	등산로 (36개노선)			12,191	24,383				
기정	등산로		1	2.0	381	762	등산로	소4-5	등34	
기정	등산로		4	2.0	490	980	등산로	대3-1	등3	
기정	등산로		5	2.0	321	642	등산로	등16	전망대26-4	
기정	등산로		7	2.0	1,913	3,826	등산로	덕전동1가구역 계	조경단	
기정	등산로		8	2.0	270	540	등산로	등7	체련공원	
기정	등산로		9	2.0	850	1,700	등산로	중2-2	전망대26-4	
기정	등산로		10	2.0	79	158	등산로			
기정	등산로		11	2.0	214	428	등산로			
기정	등산로		12	2.0	171	342	등산로			
기정	등산로		13	2.0	462	924	등산로			
기정	등산로		14	2.0	191	382	등산로			
기정	등산로		16	2.0	156	312	등산로			
기정	등산로		17	2.0	638	1,276	등산로			
기정	등산로		18	2.0	63	126	등산로			
기정	등산로		19	2.0	184	368	등산로			
기정	등산로		21	2.0	222	445	등산로			
기정	등산로		22	2.0	124	248	등산로			
기정	등산로		23	2.0	160	320	등산로			
기정	등산로		25	2.0	185	370	등산로			
기정	등산로		26	2.0	321	642	등산로			
기정	등산로		27	2.0	541	1,082	등산로			
기정	등산로		28	2.0	215	430	등산로			
기정	등산로		29	2.0	217	434	등산로			
기정	등산로		30	2.0	205	410	등산로			
기정	등산로		31	2.0	370	740	등산로			
기정	등산로		32	2.0	201	402	등산로			
기정	등산로		33	2.0	135	270	등산로			
기정	등산로		34	2.0	666	1,332	등산로	중2-3	소4-1	
기정	등산로		35	2.0	225	450	등산로	소4-5	등1	
기정	등산로		36	2.0	396	792	등산로	등31	718-12일	
기정	등산로		37	2.0	233	466	등산로	등9	등36	
기정	등산로		38	2.0	360	720	등산로	소4-4	등21	
기정	등산로		39	2.0	193	386	등산로	등7	등32	
기정	등산로		40	2.0	450	900	등산로	소1-2	남측경계	
기정	등산로		41	2.0	221	442	등산로	남측경계	등40	
기정	등산로		42	2.0	168	336	등산로	등23	등41	
	소 계	산책로 (7개노선)			1,469	4,173				
기정	산책로		1	2.0	129	377	산책로			
기정	산책로		4	3.0	663	1,989	산책로	대3-1	산5	
기정	산책로		5	3.0	302	1,007	산책로	등산로4	소로4-1	
기정	산책로		6	2.0	136	275	산책로	산2-1 (금암동 구역계)	쉼터29-5	
기정	산책로		7	2.0	131	262	산책로	쉼터29-4	커뮤니티광장29-2	
기정	산책로		8	2.0	63	127	산책로	진입광장29-1	커뮤니티광장29-2	
기정	산책로		10	3.0	45	136	산책로	주차장(9-4-5)	전통문화회관	

3. 입안사유 : 전라북도립국악원 증개축 사업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 변경
4. 관계도면 : 붙임
5. 공람 및 의견 제출 기간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6.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처 : 전주시 공원관리과(☎ 063-281-2437)
7. 의견제출 : 위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우편,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주 도시계획시설(덕진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도면



익산시 공고 제2022-845호

익산 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익산 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전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늘푸른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2년 3월 18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북 익산시 인화동2가 174번지 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인화공원)사업
 - 명 칭 :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3차)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5,917m²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익산시장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2.12.31.까지
6.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조서 참조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
9. 의견서 제출 :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3차)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공부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내용	
1	인화동2가	174	철	6,010	4,705	한국철도공사					
2	인화동2가	174-3	철	1,561	1,212	한국철도공사					
합 계				7,571	5,917						

익산시 공고 제2022-847호

익산 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익산 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전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늘푸른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2년 3월 18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북 익산시 인화동2가 174-1번지 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인화공원)사업
 - 명 칭 : 인화 도시숲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5,550m²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익산시장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2.12.31.까지
6.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조서 참조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
9. 의견서 제출 :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인화도시숲 조성사업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공부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내용	
1	인화동2가	174-1	철	37,990	4,060	국(국토교통부)					
2	인화동2가	174-2	철	9,773	1,490	한국철도공사					
합 계				47,763	5,550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88호

공인 등록 공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2022년 3월 18일

- 1. 사용개시일: 2022년 3월 16일
- 2. 등록 내역

신 규 공 인	
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출납원인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에 따른 공인 조각>	공인 인영
	